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침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침

세부사업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960 도비 288 시군비 672		
사업목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주요내용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연 480천원 수준)							
보 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육성 조례 제3조,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2.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신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신부)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연 480천원(도비 115.2, 시군비 268.8, 자부담 96)							
재원구성(%)	국고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2,982명	5,043명 (이월 3,956명 포함)	2,300명	2,500명			
	합 계	1,375	2,404	1,104	1,200			
	국 고	550	962	442	-			
	도 비	165	288	132	288			
	시군비	385	673	309	672			
	자부담	275	481	221	2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유다겸		063-280-260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식품지원부		김다운		02-6300-1760		
신청시기	2~3월(사업량 미확보 시 연장)			사업시행기관		전라북도		
관련자료								

I. 주요내용

1.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에코이몰(www.ecoemall.com)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 결과 임신부로 확인된 자 또는 ②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임산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사업 지원 가능

2. 지원 품목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 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등

- 임신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이용 가능

- 도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 물량은 인접한 광역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3. 지원방식

○ 도내 임신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거주지까지 배송

- (공급업체 선정) 도는 자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공급업체로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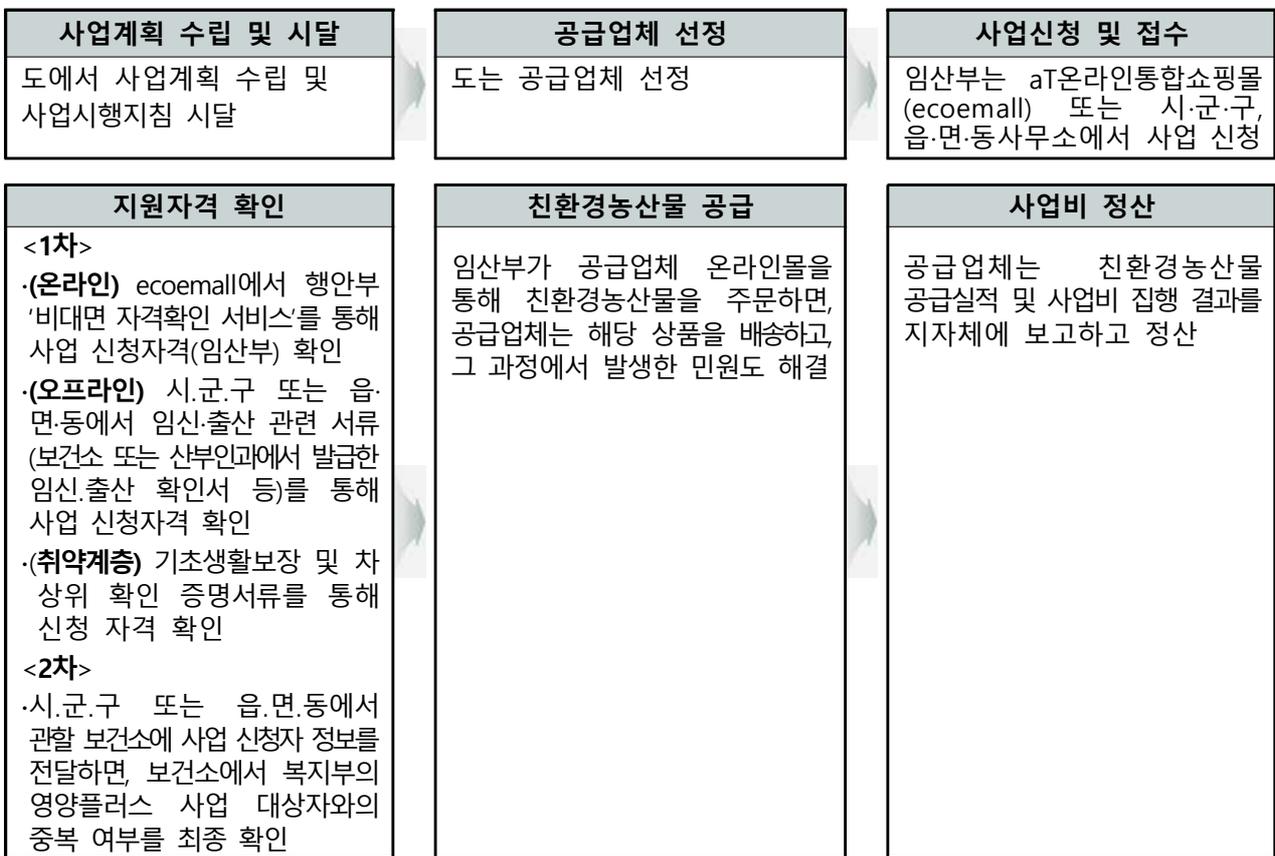
* 선정된 공급업체는 자체 쇼핑몰 보유 운영, 생산자 확보,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신청) ① 임신부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②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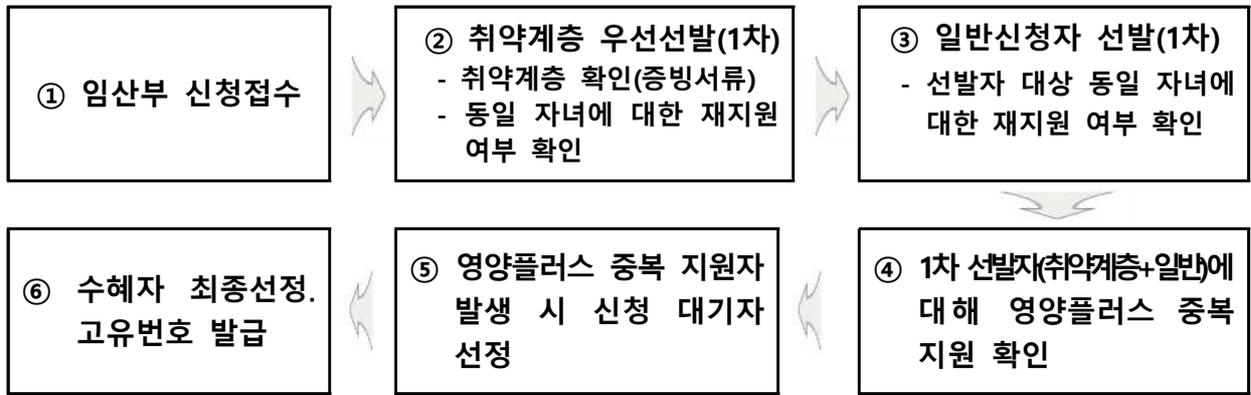
※ 읍·면·동에서 서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군에서 에코이몰 관리자 프로그램에 신청내용 입력, 이후 자격검증 및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계획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는 예비 사업자로 순서별로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포기자 발생 시 자격검증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 통보, 예비 사업자가 없을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시·군은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고유번호 부여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공급업체 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가 요청한 장소까지 배송
- (지급 및 정산) 시·군은 사업 확정(고유번호 부여)된 임산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익월 5일까지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집행 후 지자체에 사후 정산



4. 선정방식



* 신청 대기 선발자에 대해 ③,④ 절차 수행, 각 시군별 사업량 충족 시까지 반복 진행

5. 지원조건

-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288, 시군비 672, 자담 240)
 - 지원형태 : 도비 24%, 시군비 56%, 수혜자 부담 20%
- 지원한도 : 임신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0천원 상당, 초과 금액은 자부담
 - 1회 공급 한도금액 :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 단, 잔여금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30,000원 미만 주문 가능
 -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하되,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하지 않고 단순 가공 처리 (박피·절단·단순 건조 등)한 경우(ex. 간마늘, 쌀가루, 건조채소 등)는 농산물 분류에 포함하여 산정
-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23.12.10일까지 농산물 주문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자체는 임신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 * 지역별 주문사이트 오픈이 고유번호 부여일보다 늦은 경우 주문사이트 오픈일 기준
 - 시·군은 대상자가 사업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기 신청 미선정 임신부(예비사업자) 중에서 신청 순서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자가 없을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제5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육성 조례 제3조, 제5조

6. 사업량 배정

- 시군별 사업량 배정 시 전년 사업 예산집행 실적, 사업 신청량을 고려하여 사업량 배정
- 시·군은 사업 신청이 완료된 후 시군별 신청량과 대기수요 발생량, 사업잔량 등을 파악하여 도에 제출(서식 2)
 - 시·군별 잔여 수량 및 대기 수요에 따라 시·군간 사업량 재배정

II. 공급 관리 운영

1. 공급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이 원칙이며, 생산이 안되거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부족 물량에 한하여 인접한 시·도 및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2. 공급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3.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공급업체 모집 공모에 따라 신청서(서식 5)를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및 온라인 유통 역량, 생산자조직(친환경집적지구 등)과의 연계, 친환경농식품 안전 관리, 품질관리매뉴얼 등 증빙 서류

- (선정심사) 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50%) 및 현장확인·발표 및 질의·응답평가(50%)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서식 6 공급업체 평가기준 참조)
 - 단, 공모 신청접수 결과 선정업체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위원회) 지역의 생산자·소비자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지역본부,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작업장 인증 여부(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사업조직 역량,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에 따라 행정에서 평가
 - (현장평가) 심사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공급계약)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와 시·군은 계약을 체결하고 도에 그 결과를 제출

4. 시행준비

- (주문시스템) 선정된 공급업체는 사업시행 전까지 자체 쇼핑몰 등록, 포장재 확보 등 주문 건에 대한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
- (공급업체 사전협의회) 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몰 운영 및 주문관리, 민원처리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위한 협의회 개최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
 - 포장 겉면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표기(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하여 사업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홍보·교육) 시·군 및 공급업체는 사업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Ⅲ. 지원·공급절차

1. 지원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에코이몰(www.ecoemall.com)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출생증명서, 출산·임신확인서 등)를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한 자

* 임신부 자격 검증은 온라인 신청 시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확인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1-274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출하여야 함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가능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재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 사실 증명서 등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신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신청)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 보완적(오프라인)으로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 해당 시·군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 및 선발한 시·군에서 지원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중도에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대기자 선정 또는 추가 모집 가능

- (온라인) 에코이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 검증(행안부 비대면자격 검증 등)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오프라인) 신청서를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출산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 확인

*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임신부 정보를 에코이몰에 입력

○ (수혜대상 검증) 에코이몰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과 연계된 임신·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

- 시·군(읍·면·동)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시·군·구 보건소에 제공

- 시·군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읍·면·동)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자격검증이 완료된 임신부를 대상으로 에코이몰 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 미선정된 신청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로 관리

-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시·군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결과 및 고유번호를 임산부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
- (임산부 회원가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쇼핑몰에 회원가입
 -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월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
 - ※ 고유번호 부여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사업취소)
 - * 지역별 주문사이트 오픈이 고유번호 부여일보다 늦은 경우 주문사이트 오픈일 기준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23년 12월 10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2.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0천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23년 12월 10일까지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4회(연 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 1회 공급 한도금액 :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 다만, 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쌀 등은 3만원 이하 주문가능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 시·군(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형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완성형 꾸러미 선택 가능

① (선택형)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여건 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등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aT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 하여 도와 공급업체가 ‘지역협의회’에서 협의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지역 내 친환경 집적지구,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우선 사용

* 어떤 공급업체가 A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외 B, C, D 시군 지역의 임산부에게도 공급할 경우 B, C, D 지역의 친환경 농가의 생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처를 다양화할 것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GAP 또는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 유지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배송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신속하게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도가 동의한 배송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3. 품질관리

- 공급업체는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도는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광역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반품 및 환불처리, 민원사항 등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별표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 사항을 도, 시·군에 보고(발생일 후 5일 이내)

4. 공급비용 정산

- 시·군은 매월 말(또는 분기말) 고유번호를 발급한 확정 인원수 기준으로 자부담분을 제외한 농산물공급비(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선집행하고,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 공급업체는 본사업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선지급한 사업비 중 지자체 확인을 거쳐 확정된 전월 꾸러미 공급대금에 대한 정산액을 인출

5. 홍보 및 교육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맘카페 등)과 오프라인(지역보건소와 읍면동주민센터 홍보자료 비치 및 안내, 현수막 게시, 시군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6.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취급인증 취소 시 계약 해지

7. 성과측정

- (지표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수혜자 수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종료 후('23.12월~'24.1월)
 - 조사방법 : 시·군 관련자료 수집
 - 조사항목 : 지역 내 사업량 사업 신청 입산부 비율
- (지표②)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 하반기(1회)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항목 :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등
 -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8.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액, 지원방식, 품목별 선호도 등을 분석

별표 1**공급업체 준수사항**

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위탁사업장 포함)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3. 친환경농산물은 도내산을 우선으로 확보 공급하여야 하며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도와 사전 협의 후 타시도산으로 공급하여야 함
4. 공급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외에 도내 13개 시·군 친환경 농가의 생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처를 다양화하여야 함
5.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기록과 제품 입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
6. 공급업체는 잔류물질(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
7.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
8.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한편, 임산부에게 교환·환불·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발생일 후 5일 이내 그 결과를 도, 시·군에 보고해야 함
9.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내용·발생 원인·조치 결과 등을 기록하는 민원관리 대장을 반드시 작성·관리하여야 함
10.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2023년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 임신확인일() · 출산예정일/출산일()	e-mail	
	기타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없음				
자녀	이름	(□ 미출생)	생년월일	202 년 월 일 (출생신고일:)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액 : 48만원(도비 115,200원, 시군비 268,800원, 자부담 96,000원) ○ 지원기간 :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이후 '23.12.10.까지 구매 완료해야 함 				
기타 안내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보건소에 신청자의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 대상자 선정(고유번호발급) 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하거나 사업대상자 선정(고유번호발급)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p>신청인은 2023년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있어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하며, <붙임>의 개인정보활용 필수항목에 미동의할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 읍·면·동장 귀하</p>						
<p>※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 .</p> <p style="text-align: center;">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귀하</p>						
시·군·구 또는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거주자 여부 : 여(), 부() ※ 신청일 기준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부적정()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여(), 부()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0 시.군.구(또는 읍.면.동)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임신확인일 및 출산(예정)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 운영 및 통계관리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기초생활보장형태, 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예정)일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지역 보건소			
지원사업 공급업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선택)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만족도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기초생활보장형태, 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예정)일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귀중
【○○ 읍 · 면 · 동장】

[서식 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엑셀파일 통보

공급업체명(00월)

【2022 사업】

공급지역 (시군구)	확정					실적							
	확정인원 (명)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전월까지	금월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2023 사업】

공급지역 (시군구)	확정					실적							
	확정인원 (명)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전월까지	금월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서식 4]

보조금 정산서

(공급업체 → 시군구 제출용)

사업명: '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공급기간: 2023. . . ~ 2023. . .

공급인원

시군구	확정인원(명)	공급인원(명)	미공급인원(명)
합계			

공급실적

(공급연도)

(단위: 건)

시군구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시군구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분	회원 미가입	꾸러미 등 미주문	영양플러스사업 전환	기타
인원(명)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신청서

신 청 자	공급업체 명칭		법인등록번호		
	이름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		참여농가 (인증농가)	명 명	
	재배면적 (인증면적)		ha	ha	
	사업장 주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_____		(휴대폰: _____)	
	공급업체 형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주 재배품목 및 유통품목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2021년) (2022년)	천원 천원	온라인유통 경력	년 (0000년~2023년 현재까지)	
<p>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p> <p>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p> <p style="text-align: right;">_____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도지사 귀하</p>					
<p>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p>					
<p>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수행기관</p> <p>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p> <p>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p> <p>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p> <p>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p> <p>※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p>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평가(안)

<필수사항>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보유
- 자체 온라인 쇼핑몰(주문, 결제 가능)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품질 및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관할 전지역 직배송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보냉박스, 냉장직배, 저온배송 등의 운영으로 입증

1. 서류심사(100점)

구분	평가지표	평가점수
시설장비현황 (25)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15점)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 10점 -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하나 교차오염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 5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5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100㎡이상인 경우 : 5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50㎡이상 100㎡ 미만인 경우 : 4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20㎡이상 50㎡ 미만인 경우 : 3점	
	○ 꾸러미 전담 작업자 확보 여부(5점) - 5명 이상 확보: 5점 - 3명~4명 확보: 4점 - 1명~2명 확보: 3점 - 꾸러미 전담 작업자가 없는 경우: 0점	
사업조직 역량 (40)	참여 유통조직 (10)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집적지구) 참여 여부(10점)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집적지구)인 경우: 10점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집적지구)와 납품계약 체결 : 5점	
	참여농가 (10)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5점) - 100농가 이상 : 5점 - 80농가 이상 ~ 100농가 미만 : 4점 - 60농가 이상 ~ 80농가 미만 : 3점 - 40농가 이상 ~ 60농가 미만 : 2점 * 공급업체와 생산농가(친환경농업지구.단지, 개별농가 등)과 직접 공급(출하)계약 체결된 건만 인정 ○ 참여 인증농가의 인증면적(5점) - 300ha 이상: 5점 - 250ha 이상 ~ 300ha 미만: 4점 - 200ha 이상 ~ 250ha 미만: 3점 - 150ha 이상 ~ 200ha 미만: 2점 - 100ha 이상 ~ 150ha 미만: 1점 - 100ha 미만: 0점	

구분		평가지표	평가점수
사업조직 역량 (40)	친환경농산물 유통역량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10점)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점 - 7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8점 - 5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6점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점 - 30억원 미만: 2점 	
	온라인 유통경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유통 경력(10점) - 온라인 유통경력 10년 이상 : 10점 - 온라인 유통경력 7년 이상 : 8점 - 온라인 유통경력 5년 이상 : 6점 - 온라인 유통경력 3년 이상 : 4점 	
관리실태 (15)	저온위생관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 물류집배송장, 냉장 창고, 냉장배송 차량 등 콜드체인 확보 여부(10점) - 전체 유통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 5점 - 일부 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시설 확보 - GAP 또는 HACCP 지정받은 자체시설 확보 : 5점 - 자체 전처리 시설이 없어 GAP 또는 HACCP 지정받은 전처리 대행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 2점 	
	안전성관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 여부(5점) - 잔류물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 수립 : 5점 - 품질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성 결여 : 3점 - 품질관리계획은 미수립 : 0점 	
품목 다양화 (20)	품목구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취급 중인 친환경농산물 품목 수(10점) - 200개 이상 : 10점 - 150개 이상~200개 미만 : 8점 - 100개 이상~150개 미만 : 6점 - 70개 이상~100개 미만 : 4점 - 50개 이상~70개 미만 : 2점 	
	상품조달체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상품 조달 체계 구축 여부(10점) - 공급업체 소재 시군 외 도내 타 시군으로부터 상품 수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10점 - 공급업체 소재 시·군 내 상품 수급만 가능 : 5점 	
가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일로부터 매일 익일배송 가능 : +3점 ○ 친환경농산물 작업장이 GAP 또는 HACCP인증 시설 확보 : +5점 ○ 소비자 대상 친환경교육, 홍보 등 실적 : +2점 	
제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2.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 심의위원 종합의견 】

2.현장심사(100점) ※ 5단계 평가: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구분	평가지표	평가점수
<p>사업 이해도 및 시설·장비 적정성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공급업체의 역할 이해 정도 및 사업 전담 관리자 지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10) ○ 상품 제작·공급 능력(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산부 꾸러미 전담 작업장 규모 확인 2) 임산부 꾸러미 전담 인력 수 등 ○ 온라인 유통·판매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역량(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도화된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 여부 2)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활성화 정도(주문량, 품목 수 등) 	
<p>공급업체 역량 (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품목 수급계획(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체적인 품목 수급계획 수립 여부 및 타당성 2) 관할 지역 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 여부 및 향후 협력 계획 ○ 공급품목 상시조달(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산부 선호 품목 및 공통품목 상시 조달 가능성 ○ 콜드체인시스템, 위생 및 안전성 관리(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내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시 시정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당 5점 감점 ○ 창고 및 작업장의 청결도와 방충 시설 등 구비 여부(10) ○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간 관계기관 점검 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1회당 5점 감점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운영 여부(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류물질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유통물량 대비 적정성 2)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매뉴얼 구비 여부 ○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대응 매뉴얼 구비 2) 매뉴얼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 가능 여부 ○ 최근 1년 간 품질 관리 및 민원 대응 미숙 등으로 부정 언론보도 발생 여부 (있을시 감점 :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 언론보도 대처, 반복 발생 여부, 사후 관리 등 종합적 평가 	

【 심의위원 종합의견 】

소속

직위

성명

(서명)